

제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8. 31. 제천시장
- 회부일 : 2007. 8. 31.
- 상정일 : 2007. 9. 6.(제13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도로하천팀장 이종식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
-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
-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제3조(시의 책무)
 - 시장은 건설산업 관련제도개선, 건설신기술 정보제공
 - 부실 건설업체 지속적정비로 경쟁력 강화
 - 외부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시 지역건설산업 업체와 공동 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
 -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건설 자재 구입토록 권장
- 제6조(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)
- 제7조(협의회 기능)
 -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
 -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
 -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
 - 지역건설업체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
 -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근하)

-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에 본 조례 안을 제정,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제천시의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라고 판단됨
- 그간 제천시에서는 제1바이오밸리내 기업유치 및 제2바이오밸리 추진 그리고 「2010한방엑스포」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건설 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으로도 필요하다 할 것임.
- 본 조례 안은 2006. 11. 17일 충청북도에서 「충청북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」를 제정공포하고 시·군에서도 제정토록 시달된 조례로써 기본적인 조례 안은 「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」를 그 모체로 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

- 제3조 (시의 책무)에서

- ▶ 제1항, 제2항에서는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한 시의 지원시책을 명시 하였고,
- ▶ 제3항에서의 지역건설업체의 지속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도모 내용은 제천시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인위적인 정비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, 계약위반등 부실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등의 별도의 대책으로 경쟁력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
- ▶ 제4항에서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도록 되어 있으나, 이 또한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제27조 제1항의 하도급의 법정비율을 초과할 수는 없을 것임.
- ▶ 제5항의 민간사업 인·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의 적극권장과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건설자재구매 권장등은 별도의 추진대책을 수립 실질적으로 확행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.

- 제5조(자랑스러운 건설인)에서

- ▶ 제6조에 근거하여 제천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될 시, 이에 대한 시상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내용이 없으므로 본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시,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되면 이에 대한 PQ심사 가점부여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명시하여 자연스런 경쟁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인 육성에 이바지 되도록 하여야 하기에 향후 규칙제정 내용에 대하여도 체크하여 보시기 바람.
- 본 조례 안 검토결과, 조례제정의 취지나 목적을 뒷받침할 내용이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, 제천시에서는 각종 건설사업 추진 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간이 효율적인 업무 협의로 지역건설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받아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며, 또한 조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규칙 제정에 신경을 써야 하며 또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사이에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이에대한 의견은?(유영화 의원)

나. 답변요지 <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>

-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자세히 정하고자 하며, 특히 지역건설업체 간담회시 회계팀 계약부서 공무원을 포함시키는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가고,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.

5. 소수의견

“ 없 음 ”

6. 토 룬 요 지

“ 없 음 ”

7. 심 사 결 과

“ 원 안 가 결 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. 끝.